

【논문】

북송대 契丹 사신의 迎送과 그 특징*

유 빛 나**

차례

- I. 머리말
- II. 양국의 國信使 파견과 伴使제도의 정립
- III. 국경에서의 거란 사신 迎送 절차
- IV. 伴使의 인선과 그 특징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연의맹약 이후 북송과 거란 사이의 정기적인 국신사 파견이 이루어지면서, 거란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북송의 외교적 모습을 고찰하였다. 특히 북송에서 거란사신을 국경에서부터 황제가 있는 개봉 인근까지 접대와 안전을 지키는 接伴使부터, 개봉 인근에서 거란 사신을 영접하여 북송황제를 배알시키고, 다시 개봉을 떠날때까지 거란사신을 접대한 관반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봉 인근에서 거란사신을 다시 국경까지 접대하고 안내하는 송반사 등 거란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다양한 반사들이 파견되었다.

사신을 맞이해서 황제를 만나 돌아가는 여정까지 송의 반사들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조그만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중차대한 임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외교적 특성상 학문적 소양과 성품이 검증된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었고, 더불어 거란에 대한 정보가 밝은 사람, 거란으로 사행을 수행한 사람이나 이전에 거란 사신의 반사를 수행한 신하들이 중

* 이 논문(또는 저서)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 「10~12세기 북방민족의 대외팽창과 외교연구」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임(NAHF-2022-기획연구-18).

**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용되었다.

이러한 반사의 운용은 이 시기부터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었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비슷한 제도가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동아시아 외교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契丹, 國信使, 伴使, 北宋

I. 머리말

契丹¹⁾과 북송은 10세기중엽부터~12세기초기까지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²⁾를 이루는 두 축으로, 1004년 澶淵之盟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하고, 화평관계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의 우호를 다지고 화평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

- 1) 거란(契丹)은 국호(國號)이자, 동시에 민족이름이다. 거란 국호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劉浦江, 2008, 『遼朝國號考釋』, 『松漠之間』, 中華書局 참조).

연대	한문국호(漢文國號)	비한문국호(거란문자)
916~937	대거란(大契丹)	합라거란(哈喇契丹)(전칭) 대거란, 거란국(契丹國), 거란(간칭)
938~982	대요(大遼) - 연운십육주(燕雲十六州) 일대 대거란(大契丹) - 거란고지(契丹故地)	
983~1065	대거란	
1066~1125	대요	

이러한 연구성과와 더불어 최근에 거란문자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한문문헌중에서 “대거란”이 국호일 때, 거란문자에서는 “거란·遼國”으로 “거란”이 “요” 앞에 있다. 또 반대로 한문문헌중에서 “大遼”가 국호일 때, 거란문자에서는 “요국·거란”으로 “요”가 “거란”보다 앞에 있어 두 개의 국호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劉鳳翥, 2006, 『契丹大字《耶律祺墓志銘》考釋』, 『內蒙古文物考古』, 2006年01期 참조).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국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여기서는 편의상 거란으로 칭하고자 한다.

- 2) 10~13세기 몽골이 등장하기 전까지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어느 한쪽이 군사적으로 월등히 압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국이 상호 협력 및 견제를 통한 세력균형이 이루어졌던 ‘다원적 국제질서체제’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된 대표적 논고로는 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동양사학연구』 101; 김성규, 2010, 「3개의 ‘트라이앵글’: 北宋時代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大勢와 그 특징에 관한 試論」, 『역사학보』 205).

계속되었다. 특히 이러한 바탕속에서 등장한 사신외교는 다소 의례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년에 3~4차례 정기적인 사행의 왕래는 크고 작은 틈이 생길 때마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양국간 외교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기적 사신외교도 泛使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양국의 긴장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백년동안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사행 왕래는 황제를 대신해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사신 왕래와 접대는 곧 양국의 위신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사신들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하나씩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004년 전연의 맹을 계기로 사행이 오고가면서 사신을 대접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고안되었다. 특히 接伴使는 국경에서부터 황제가 있는 開封 인근까지 거란사신의 접대와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관반사는 개봉 인근에서부터 황제를 만나고 개봉을 떠날 때까지 거란 사신의 접대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반사의 연구는 거란과 송의 외교제도를 다루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그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³⁾

이처럼 사신을 맞이해서 황제를 만나 돌아가는 여정까지 접반사와 관반사의 역할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조그만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대한 임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 첫 번째 만남의 장소인 국경에서 송이 거란 사신을 국경에서 어떻게 迎送하고 대우하였는지 만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접반사와 관반사의 역할과 그 기능을 검토하고, 특히 접반사 및 관반사 인선과 그 특징을 통해서 송이 거란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송의 사신 접대 시스템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 특징을 통해서 송이 어떻게 거란을 인식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3) 반사와 관련해서 주요한 연구성과로는 曹顯征, 2008, 『遼宋交聘制度研究』 中央民族大學 박사학위논문; 周立志, 2021, 「宋朝對遼金交聘使節的入境運作」, 『宋史研究論叢』 제19집 참조.

II. 양국의 國信使 파견과 伴使제도의 정립

거란과 송의 관계에서 전연의 맹약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연의 맹약을 기점으로 거란이 100년 넘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외교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이를 봉합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었고 전쟁없이 양국의 평화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송과 거란의 맹약을 통해 평화가 정착되면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송과 거란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거란과 송 사이에서 이루어진 맹약의 내용은 평화 정착을 위한 세부사항들이 명시되었다. 송은 해마다 군사비 명목으로 絹 20만필과 은 10만량을 거란으로 보내는 것과 각국의 변경에서는 각자의 경계를 지키고,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서로 침범하지 않으며, 월경하는 경우 은닉하지 않는 것,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양국이 서로 誓書를 주고 받았다.⁴⁾

맹약의 내용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맹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황제는 서로 형제관계를 맺었고, 송진종이 형이 되었다. 또한 송진종이 거란 성종의 어머니인 承天皇后를 숙모라고 부르게 되었다.⁵⁾ 이러한 호칭은 양국의 황제를 대등하게 인식했을 뿐 아니라 서로 擬制家族關係를 형성하여 양국의 화평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⁶⁾ 이후 양국은 해마다 正旦과 생신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國信使를 파견하였다.⁷⁾ 국신사의 명칭은 오대시대부터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4) 『契丹國志』 권20. “維景德元年，歲次甲辰，十二月庚辰朔，七日丙戌，大宋皇帝謹致誓書于契丹皇帝闕下。共遵誠信，虔守歡盟，以風土之宜，助軍旅之費，每歲以絹二十萬匹，銀一十萬兩，更不差使臣專往北朝，只令三司差人搬送至雄州交割。沿邊州軍，各守疆界，兩地人戶，不得交侵。或有盜賊逋逃，彼此無令停匿。至於壠畝稼穡，南北勿縱搔擾。所有兩朝城池，並可依舊存守，洶濠完葺，一切如常，即不得創築城隍，開掘河道。誓書之外，各無所求，必務協同，庶存悠久。自此保安黎獻，謹守封陲，質于天地神祇，告于宗廟社稷，子孫共守，傳之無窮，有渝此盟，不克享國。昭昭天鑒，當共殛之。遠具披陳，專俟報復，不宣”。

5) 『遼史』 권14, 統和 22년, 12월 戊子.

6) 擬制家族關係는 성립 후 외교문서상에도 명시되었고, 황제가 죽으면 다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황제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생존해 있으면, 어머니와 할머니의 생신과 정단을 축하하는 사신이 파견되는 등, 이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7) 유빛나는 거란과 송의 국신사 파견의 양상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정기적인 사행, 상장의례와 관련된 사행, 특수한 목적으로 파견된 泛使로 구분하였다. 정기적인 사행은 양국의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는 生辰使와 새해 첫날을 축하하는 正旦使로 서로 관계가 끊어지기 전까지 해마다

송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거란과 송 사이에 주고 받은 사행을 국신사라고 불렀다.⁸⁾

거란사신이 송을 방문하면서 거란 사신을 관리하고 접대하기 위한 부서가 필요하였고, 이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기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다음의 기사들을 살펴보자.

A : 管勾往來國信司(이하 國信司)를 두어, 西京作坊使 廉州刺史 內侍左班副都知 閻承翰 및 供備庫使 帶御器械 綦政敏에게 국신사를 주관케 하였다. 契丹과 修好하고 나서부터, 해마다 사신을 보내 交聘하니, 송한에게 비로소 그 일을 전담케 했고, 이로 인해서 排辦禮信所는 이때 이르러, 署局의 印을 주조하였다.⁹⁾

B : 景德 3년(1006) 12월에, 雄州에서 말하길, “근래에 전투를 할 때, 本部(옹주)는 매번 기밀을 유지할 일이 있으면, 누설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馴謹吏를 뽑아서 이것을 주관케 했는데, 이것을 機宜司라고 불렀다. 지금은 거란과 화목하게 지내니, 청컨대 국신사로 바꿔주길 청합니다”라고 하자, 이것을 따랐다.¹⁰⁾

C : 國信所는 거란의 사신이 외교 업무차 방문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생략) 경덕 4년(1007) 8월에 眞宗이 근신에게 “거란의 대사와 부사가 궁궐에 도착해 알현

사신을 주고 받았다. 비정기적 사행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하였다. 상장의례 관련 사행은 양국의 황제 또는 황태후 및 태황태후가 崩御하면, 부고를 알리는 것부터 祭奠使, 弔慰使, 새로운 황제자리에 오른 황제를 축하하는 賀登寶位使, 상장의례가 끝나면 답례로 파견한 回謝使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사는 그 명칭으로 사행의 목적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양국의 외교적 현안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란과 송 사이의 국신사 파견과 그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유빛나, 2021, 「거란과 송의 국신사 파견과 그 양상」, 『세계역사문화연구』 제59집 참조.

- 8) 국신사의 의례적 측면을 다룬 논문으로는 古松崇志, 2014, 「契丹·宋間の國信使と儀禮」, 『東洋史研究』 73-2; 김성규, 2012, 「宋의 國信使가 契丹의 황제·황태후를 알현하는 의례」, 『동양사학연구』 120; 김성규, 2012,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의례」, 『역사학보』 214; 김성규, 2014, 「거란의 '國母' 對 송의 '황태후'-賀慶使 교환으로 보는 송·거란 외교의 일면」, 『사립』 50 참조.
- 9) 『續資治通鑑長編(이하 長編)』 권66, 景德 4년, 8월 己亥.
- 10) 『宋會要輯稿』 병27, 景德 3년, 12월, “雄州言, 頃者用兵之際, 本部每有密事, 不欲漏露, 因擇馴謹吏專主行之, 號機宜司. 今契丹修和, 請改為國信司, 從之”.

할 때와 물러날 때, 館(숙소)에서 그들을 접대하고, 例物을 하사하고, 아울러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일은 모두 규정대로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2년에 걸쳐 이미 定例가 만들어졌으니, 특별히 管勾往來國信所 한곳을 설치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예전에는 단지 ‘排辦禮信所’라고 하였다가 이 때에 이르러서는 부서를 설치하고 인장을 비치하게 되었다.¹¹⁾

위의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송은 태종대부터 거란과 전쟁을 계속하면서 거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송의 응주에 機宜司를 설치하여 거란과 관련한 기밀 사항을 관리하였으나,¹²⁾ 전연의 맹약으로 거란과의 화평관계가 지속되면서 기존의 기의사를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사행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였던 측면에서 볼 때, 거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송에서는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신소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양국의 사행시스템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물론 송이 다른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익숙할 수 있지만, 거란과의 외교관계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송이 다른 국가들과 책봉조공관계 속에서 외교가 이루어졌다면, 송과 거란의 관계는 전연의 맹약에서 명시되었다시피 양국의 황제를 상호 인정하는 대등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례와 예의를 중시하는 송 입장에서 거란과의 외교형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송의 의례를 규정한 법령집에도 반영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1) 『事物紀原』 권7, 國信所, “國信所掌契丹使介交聘之事. ……(생략) 景德四年八月, 帝謂近臣曰, 契丹使副到闕見辭及館接伴, 支賜例物, 并朝廷遣使合行之事, 並有規制行之. 以二年已成定例, 特置管勾往來國信所一司, 舊止云排辦禮信所, 至是立局置印也”.

12) 다만 평화관계가 지속되었고, 국신사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전의 첩보 임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전연의 맹 이후에도 송에서의 거란 소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송의 기의사를 통한 거란의 첩보 활동을 다룬 논문으로는 홍성민, 2020, 「송대 對遼 첩보 조직 및 운영 연구」, 『동양사학연구』 152 참조.

송대 의례와 관련해서 제일 자세하게 거란과 관련된 의례가 남아있는 『政和五禮新儀』¹³⁾를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외교의례와 관련된 항목은 권 148~권155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권150~권155까지 항목은 거란과 관련된 의례로 채워져 있어 거란과는 세부적인 의례까지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란과 달리 서하, 고려, 交州, 西南蠻夷 등은 전체로 묶어서 하나로 인식해서 편찬한 것으로 볼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송이 거란을 다르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¹⁴⁾ 더불어 거란 사신을 칭하는 명칭은 大遼使로 인식하였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進奉使, 말 그대로 방물을 바치기 위해 송에 파견된 사신으로 종주국과 조공국 사이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사행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정화오례신의』에 나타난 외교의례 중 외국사신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 『정화오례신의』 중 외교의례 관련 부분표

권	편명	비고
148	「蕃國主來朝儀上」	
149	「蕃國主來朝儀下」	
150	「紫宸殿大遼使朝見儀」	송-거란
151	「紫宸殿正旦宴大遼使儀」	송-거란
152	「紫宸殿大遼使朝辭儀」	송-거란
153	「崇政殿假日大遼使朝見儀」	송-거란
154	「崇政殿假日大遼使朝辭儀」	송-거란

- 13) 송대의 의례는 당대의 『大唐開元禮』를 중심으로 송인종 천성년간(1023~1031)에 처음으로 『禮閣新編』이 만들어졌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太常因革禮』에轉載되어 있어서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김성규, 2012,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의례」, 『역사학보』 214, 113p). 마지막으로 鄭居中 등이 『政和五禮新儀』를 政和 1년(1111)에 편찬하였는데, 시대가 조금씩 변화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각신편』의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14) 전연의 맹 이후로 거란과 송이 대등한 지위가 되면서, 송은 타국에 대한 의례와 비교되는 거란만을 위한 의례의 정비에 몰가피하였다. 따라서 거란에 대해서는 敵國에 대한 예로서 「敵禮」를,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大唐開元禮』의 전통에 따라 蕃國에 대한 예로서 「蕃禮」를 적용하였다. 이번례 역시 상대국의 지위를 각각 다르게 부여하여 차별하는 예법을 적용하였다(박윤미, 2015, 「金代 賓禮를 통해 본 宋·高麗·夏의 국제 지위」, 『동북아역사논총』 49, 317p).

155	「夏國進奉使見辭儀」 「高麗國進奉使見辭儀」 「交州進奉使見辭儀」 「宜州西南蕃黎州等處進奉人見辭儀」 「海外進奉蕃客見辭儀」	송-서하 송-고려 송-교주(베트남) 송-의주서남번(만이) 송-해외진봉사(해상)
-----	---	---

거란과 송 양국의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기준과는 다른 형태의 대등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신을 대우하고 관리하는 형태도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거란과 송 사이에서 새롭게 사신을 맞이하는 일종의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伴使제도이다. 즉, 책봉조공관계가 아닌 양국 간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반사제도가 고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오대시기부터 조금씩 보이는 하지만,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한 것은 전연의 맹약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사신을 국경에서 맞이하여 수도까지 안내하는 접반사, 수도에서 다시 황제를 만난 후 다시 돌아가는 과정까지의 관반사,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국경까지 안내하는 송반사가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반사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거란과 송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에서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¹⁵⁾ 다음 장에서는 접반사, 관반사, 송반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5) 송은 거란 사신을 접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접반사와 관반사를 파견하였지만, 고려와 서하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引伴使와 押伴使를 파견하였다. 그 기능은 같지만, 용어에서부터 구별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화 연간(1111~1117)에 송이 고려의 사신을 國信使로 승격시켜 禮遇가 서하보다 위에 있게 되면서, 거란 사신과 함께 樞密院에 예속시켰으며, 引伴官·押伴官 등도 고쳐 접반사와 관반사 등으로 용어가 변화되었다. 따라서 국신사와 진봉사를 송에서 접대할 때, 각각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국경에서의 거란 사신 迎送 절차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양국이 전연의 맹약을 통해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800회 정도의 사신을 주고 받았다. 양국이 백년 정도 화평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에 대략 일 년에 3~4차례 정도 사신을 주고 받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거란 사신의 수행을 담당하는 排辦禮信所가 경덕 4년(1007)에는 主管往來國信所 또는 管勾往來國信所로 변모하면서 체계적인 거란을 위한 사행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면,

D : 주관왕래국신소는 (송과) 거란사절과의 사이에서 교빙의 일을 담당하였다. 경덕 초에 내신을 보내 배판예신소가 (거란과의 교빙의 일을) 처리하였다. 경덕 4년(1007)에 (주관왕래국신소로) 고쳐졌고, 매년 거란사신이 이르면, 館伴·接伴·送伴使·副使·管押三番諸司·內侍三班 및 編攔寄班 등이 있었다.¹⁶⁾

다만 거란 사행을 접대하기 위한 시스템은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이시기에 와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국의 사행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양국의 황제를 대표해서 파견되는 사신의 접대는 송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거란 사신단을 송황제가 있는 개봉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동안 불편함없이 보필해야만 했다. 더불어 사신들의 특이사항 혹은 돌발상황은 없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했기 때문에 사신의 인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거란사신을 처음으로 국경에서 맞이하는 접반사의 역할은 국가의 얼굴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접반사는 전연의 맹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다. 송태조 開寶 8년(975), 3월에 거란이 克妙骨慎思를 송에 보내오자, 閣門副使 郝崇信이 境上에서 거란사

16) 『송회요집고』 職官 36. 主管往來國信所, “主管往來國信所, 掌契丹使介交聘之事. 景德初, 遣內臣排辦禮信. 四年改, 每契丹使至, 則有館伴·接伴·送伴使·副使·管押三番諸司·內侍三班及編攔寄班等”.

신을 맞이했고, 수도 부근까지 와서 都亭驛에서 유숙했다고 한다.¹⁷⁾ 즉 접반사는 국경에서부터 사신을 맞이하여 송 황제에 있는 개봉 부근까지 거란 사신의 접대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거란과의 교빙 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서가 생기면서, 일종의 양국 관계에서의 사신을 파견하고 접대하는 메뉴얼이 마련되었다.

E : 을해일에 知雄州 何承矩가 장래에 거란의 사신이 경계(웅주)를 들어오게 될 텐데, 잠시 新城(거란의 영토)에 머물게 하고 接伴使가 도착하길 기다려서 邊界의 첫 머리에서 영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이를 좇게 하였다. 하승구는 使命이 비로소 통하니, 대우하는 예절이 의당 적당할 수 있어야 여러 가지가 모두 오래 시행될 수 있다고 말하며 마침내 모두 조목조목 써서 올렸다. 진종은 조를 내려, 승구가 건의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어 일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편의로 裁決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 황제가 거란사신을 맞이하는 날, 大使에게 (물건을) 내리고, 副使에게도 (물건을) 내렸다. 그 종인인 上節 18인, 中節 20인, 下節 85인에게도 (물건을) 내려주었다.¹⁸⁾

위 기사를 보면, 雄州刺史 하승구의 건의에 따라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거란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들을 정비해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연의 맹약 이전부터 양국간 사신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사들을 통해서 보충하였고, 보충할 수 없는 것들은 송황제가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국경에서부터 송황제를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최소 두달 이상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규정들은 세세하게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거란과 새롭게 사행을 주고 받게 되면서 접반사보다 먼저 거란사신이 도착하면 거란의 신성현에서

17) 『長編』 권16, 開寶 8년, 3월 己亥.

18) 『長編』 권60, 景德 2년, 5월 乙亥, “知雄州何承矩言, 將來契丹使入界, 欲令暫駐新城, 俟接伴使至, 迎於界首, 從之. 承矩又言使命始通, 待遇之禮, 宜得折中, 庶可久行, 乃悉條上. 手詔嘉納, 仍聽事有未盡者, 便宜裁處. … 朝見日, 賜大使……, 副使……. 其從人, 上節十八人……, 中節二十人, ……下節八十五人, ……”.

기다리게 한 후 접반사가 도착하면 맞이하는 것과 거란 사행을 접대하는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령을 만들어 건의하였다.

이에 황제는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승구에게 편리한대로 재단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였다. 즉 이전의 교빙시스템을 참고하면서도 새롭게 시작된 관계에서 그 실정에 맞게 시스템들이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란사신이 송나라를 입국해서 황제를 만나고 다시 거란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송이 부담하였다.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모든 제반비용의 부담부터 거란 사절단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의 파견, 거란 사절단이 가져온 물건들을 모두 송측에서 운반해야하는 등, 사행의 규모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원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국경을 마주한 옹주와 거란사신이 지나가는 國信路에서는 사신 접대 비용을 직접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거란사신 접대 비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公使錢을 증액하여 지급하여 그 경비에 충당하였다. 이러한 공사전은 公用錢이라고도 하며, 송대의 로, 주, 군과 자사 이상에게 고하에 따라 주어지는 특별 접대비용으로, 국경지대에서는 주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송대 후기로 갈수록 공사전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¹⁹⁾

사절단의 규모는 정사와 부사를 대표해서, 상절, 중절, 하절로 구분하였고, 대략 100명 내외로 추정된다. 『建炎以來朝野雜記』 권12, 乙集에는 舊例에 南使(송나라 사신)가 北境에 들어오면, 거란황제는 접반사를 보내 남사를 맞이하였고, 정사, 부사 이하 삼절은 모두 말을 타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사료 E에 나타난 거란 사절단의 방문 인원을 살펴보면, 정사, 부사, 상절 18인, 중절 25인, 하절 85인으로 130명 정도이다. 그 이듬해 거란사신의 종인이 백명을 넘지 말게 하라는 詔書가 있고 특별하게 그 이후에 사신단의 수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00명이 잘 지켜졌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⁰⁾

19) 『長編』 권301, 元豐 2년 12월, “增雄州公使錢二千緡, 以坊場錢給. 以知雄州苗授言, 熙寧中裁減公使錢為八千緡, 用度不足, 州當國信往來頓舍之地, 非他郡比故也”.

사신단의 수가 100명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신단이 가지고 간 짐을 나르기 위해서 우마차와 짐꾼들이 필요하였고, 또한 안전하게 황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사신단 수 이상의 군사들이 동원되었다. 대략 100명에 대한 필요 인원은 배 이상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행은 정기적 사행외에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대략 한해 3-4차례 평균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행 인원의 변화에 따라서 접대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 양국은 민감하게 인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사행록과 사료들을 찾아 보면, 國信路의 관리들은 사신단이 지나갈 때마다 나와서 인사뿐 아니라 사신단이 머물 숙소와 식량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²¹⁾

그렇다면 과연 국경에서 양국 사신이 만나는 모습은 어떠했을까? 국경에서 사신을 맞이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상세한 기록이 전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진양이 남긴 행정록을 통해서 일부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F : (5월) 11일에 접반사 정사 泰州觀察使 蕭好古 및 부사 太常少卿 楊規中이 사람을 보내 主名·國諱·官位를 전하면서, 접견하기를 청했다.²²⁾ 신(陳襄) 등이 즉시 白溝橋 북쪽을 지나자 접반사와 접반부사가 말을 타고 있었고, (우리와) 서로 마주하였다.²³⁾

20) 『長編』 권63, 경덕 3년 11월, “詔入契丹使從人不過百人”는 기록이 있다. 이 사료는 송에서 거란으로 들어가는 사신의 종인을 백명을 넘지 말게 하라는 기사로, 거란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사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북송 조공을 바치러 오는 여러 세력들 중에, 20% 정도를 차지했던 서남만이는 인원수가 시시각각 달라져 천명을 넘는 경우도 많았다.

21) 전연의 맹 이후부터 1081년까지 거란 사신이 개봉까지 가는 國信路는 白溝 - 雄州 - 莫州 - 瀛州 - 深州 - 冀州 - 恩州 - 大名府 - 澶州 - 都亭驛 - 개봉이었다. 그러나 1081년 국신로가 개편되면서, 백구 - 응주 - 막주 - 영주 - 趙州 - 邢州 - 相州 - 滑州 - 都亭驛 - 개봉으로 변경되었다(王楚, 1996, 『宋東京至遼南京驛路考』, 『古代地理叢考』, 中華書局 참조).

22) 避諱는 조상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이 예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름을 피해서 부르는 것으로, 국가, 즉 황제와 관련된 피휘는 國諱라고 하였다. 국휘는 황제와 관련된 7대 이내의 조상들의 이름을 피하는 것으로, 한자가 같거나 음이 비슷한 모두 피해야 했다. 이러한 避諱는 중국 고대부터 오랫동안 행해져 왔고, 중국 주변의 나라들까지 전해져 관습으로 굳어졌다(한용수, 2009, 『韓中避諱小考』,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참조). 따라서 상대 국가를 방문하고 사자들이 처음 만나기 전에 상호 국가의 국휘를 존중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먼저 만나 국휘를 교환해, 양국의 국격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앞서 5월 10일날 진양이 白溝驛에 도착했고, 11일에 거란사신이 먼저 사람을 보내 주명·국휘·관위 등이 적힌 문서를 보내 서로 교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백구교를 지나 거란 영토에 들어서면 접반사가 나와서 서로 마주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제의 이름과 역대 황제의 이름과 묘호가 담긴 문서를 보냈다는 점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접반사와 관계된 자료에서 기본적인 주명과 국휘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적지 않게 출현하는 것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²⁴⁾

거란과 송의 사행 기록은 아니지만, 송과 금 초기 송의 허항종이 금을 방문하면서 남긴 『宣和乙巳行程錄』에서 비슷한 양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G : 양국의 국경에 각각 幕次가 있고, 行人으로 하여금 먼저 국신사 정사와 부사의 門狀을 가지고 금측에 보내게 하였고, 금 역시 접반사의 정사와 부사의 門狀을 가지고 와서 回示케 한 후, 이에 국경을 넘을 것을 청하였다.²⁵⁾

행인이 먼저 국신사 정사와 부사의 門狀을 들고 금측에 건네면, 금 역시 접반사 정사와 부사의 문상을 송 사신단에게 보이고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국경을 넘어갈 것을 청했다고 한다. 여기서 문상은 일종의 명함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가는 사신단이었기 때문에 파견된 사

23) 陳襄, 『神宗皇帝即位使遼語錄』, “十一日, 接伴使副泰州觀察使蕭好古·太常少卿楊規中差人傳語, 送到主名·國諱·官位, 及請相見. 臣等即時過白溝橋北, 與接伴使副立馬相對”.

24) 『송회요집고』 職官 36, 主管往來國信所, 神宗 治平 4년에 따르면, “神宗治平四年, 六月, 招應差入國接伴等職(名位)[位·名]銜有北朝名諱者, 並回避”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같은 책, 蕃夷 2, 遼下, 哲宗 紹聖元年的 기록에 따르면, “紹聖元年閏四月二十六日, 樞密院言, 瀛州通判徐興宗名與北朝廟號偶同, 因遼使問, 即權更易, 詔後為例”로, 거란 황제의 廟號와 우연히 같아, 이로 인해 거란 사신이 이 사항을 묻자, 바로 임시로 고쳤다는 기록에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法例로 삼아 시행하라는 것으로 사행과 관계된 사람뿐 아니라 지나가는 길목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신경써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25) 『大金國志』 권40, “兩界各有幕次, 行人先令引接齋國信使·副門狀過彼, 彼亦令引接以接伴使·副門狀回示, 仍請過界”.

신과 관련된 기록뿐 아니라 주명·국휘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진의 외교정책이 대부분 거란의 정책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여진의 모습이 거란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행위는 사절단이 오고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양국 모두 접대하는 과정이나 사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일종의 금기라고 볼 수 있다. 송측의 사료가 전하진 않지만, 금의 접반 절차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송에서도 이와 비슷한 국경의 모습이 연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진양의 어록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5월 11일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접반사가 나와서 미리 방비했다는 것이다. 이는 즉 사행을 파견하기에 앞서 사행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양국경에서는 ‘牒’이라는 형태의 문서를 주고 받으면서, 일종에 신속하고 명료하게 각국의 정보를 전달하고 국경내 업무협의를 위한 외교시스템을 구축되어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²⁶⁾ 특히 양국의 사신관계에 나타난 喪葬儀禮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H : 송진종 大中祥符 2년(1009) 12월 24일에, 응주에서 말하길, 涿州에서 첩을 받았는데, 契丹國母 蕭氏가 이달 12일에 죽었고, 耶律信寧이 와서 訃告를 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를 내려 관을 보내 이것을 맞이하고, 7일간 輟朝하고, 날을 골라 制服하고, 禮官에게 명해 詳定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²⁷⁾

26) 첩문서와 관련해서 이 시기 외교적 특징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분석한 논문에 대해서는 古松 崇志, 2010, 「契丹·宋間における外交文書としての牒」, 『東方學報』 85 참조. 이러한 첩문서 형태의 전달은 거란과 고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송과 고려, 송과 서하 사이에서도 나타나며, 일종의 양국 국경 연락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와 거란 국경 사이에서의 첩문서 형태의 전달에 관한 연구로는 정동훈, 2018, 「고려-거란 관계에서 세 층위의 소통 구조」, 『한국역사연구회』 107; 윗빛나, 2019, 「契丹과 高麗의 사절 왕래-東京使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70 참조.

27) 『송회요집고』 권301, 대종상부 2년 12월.

承天皇后의 죽음을 알리는 일종의 부고장이긴 하지만, 먼저 간단히 첩으로 상황 설명을 한 후, 정식으로 告哀使가 찾아갈 것을 통보하였다. 소식을 들은 응주에서는 송황제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소식을 들은 송황제는 이에 발 맞춰서 갑작스럽게 사신이 오기 때문에 분주히 접반사를 보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상장의례뿐 아니라 泛使 파견에서도 나타나는데, 급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식 사행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접반사의 파견은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I : 雄州에서 거란의 涿州가 이첩하여, 본국이 장차 고려를 정벌하고자 右監門衛將軍 耶律寧을 보내 國書를 받들고 와서 알린다고 말했다. 황제가 말하기를 전에 孫奭을 보내 東封하러 가는 것을 알렸는데, 거란이 손석을 국경지역에 묵게 하고 단지 답서만 보냈다. 지금 그(범사) 사신이 왔으니 마땅히 사신을 보내 접반하여 이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이고, 만약 강하게 궁으로 가고자 한다면 또한 그 청을 좇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율녕이 탁주에 이르자 李允則이 그를 멈추게 했는데, 아율녕이 나라의 명을 받들어 급히 가서 기밀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굳이 머무르지 않았다. 이윤칙이 즉시 사신을 보내 그와 함께 궁에 이르게 했다.²⁸⁾

범사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황제를 직접 만나지 않고 국경 부근에서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범사와 황제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사와 이에 따른 답방 차원의 범사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범사에 비추어 볼 때, 국경 부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사인지는 아니면 황제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사신 모두 접반사가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28) 『長編』 권74, 大中祥符 3年, 10月 辛亥.

29) 『長編』 권135, 景德(慶曆) 2년(1042), 11월, 정유(丁酉)의 기록을 보면, 당시 거란의 범사 소해(蕭愷)가 오는데, 급하게 송에 오다 보니까, 송의 접반사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보통은 접반사가 오기까지 사신을 입국시키지 말고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주통판(雄州通判)이 접반을 해서, 거란 사신을 수도로 안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서 응주통판은 규정을 어겼다고 하여 탄핵을 받게 되었다. 당시에도 당시 첩을 통해 국경에 진입하는 날짜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접반사가 오지 않은 것과 다른 사람을 보내 접반사 역할을 맡게한 것은 외교적 결례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접반사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거란사신을 맞이하고, 황제가 있는 수도부근까지 사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접반사의 경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범사나 상장의례와 같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형의 경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신 접대에 용이한 지방관이 접반사로 임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애사의 경우 첩으로 통보를 한 후 대부분 바로 사신들이 오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접반사의 역할은 수도 개봉부근까지 거란사신을 안내하고 난 후, 바로 관반사와 임무를 교대하는 것이었다. 관반사는 수도부근에서 거란사신을 인계받아 황제를 만나기 전 준비작업에서부터 황제를 만나고 일어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의례를 담당하였고, 끝으로 다시 수도부근까지의 접대를 담당하였다. 어찌보면 접반사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황제가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반사가 없었던 시점에서는 접반사와 송반사가 관반사의 역할까지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접반사와 송반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황제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새롭게 관반사에 분리시켜 귀속시켰을 것으로 생각되고, 초창기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반사의 역할을 보면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J : 翰林學士 李宗諤과 東上閣門使·忠州刺史 曹利用을 在京接伴契丹賀承天節使 正사와 부사로 삼았다.³⁰⁾

翰林學士 李宗諤, 曹利用을 承天節을 축하하러 온 거란사신의 在京接伴使로 임명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거란에서 보낸 賀承天節使를 접대하는 屯田員外郎·權判三司勾院 杜夢誥과 侍禁閣門祇候 康宗元을 接伴契丹賀承天節使로 삼았고, 또한 이 사신들이 돌아갈 때 送伴使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즉 재경접반사는 수도에 머물면서 접반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신으로, 접반사와 재경접반사는

30) 『長編』 권61, 景德 2년, 11월, “翰林學士李宗諤, 東上閣門使忠州刺史曹利用, 在京接伴契丹賀承天節使”.

구분해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재경접반사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고,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관반사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송반사의 첫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K-1 : (송태종의 생일(乾明節)을 축하하기 위해서) 거란에서 파견한 耶律諸里 등이 귀국하고자 하직인사를 하자, 供奉官·閣門祇候 王侁에게 조를 내려 境上까지 送伴하게 하였다. **송반사는 대체로 이때 비롯되었다.**³¹⁾

태평흥국 3년(978), 10월에 거란사신 야율해리가 송황제에게 귀국하려고 하직인사를 드리자, 供奉官·閣門祇候 王侁을 보내 국경까지 거란사신을 안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기록을 보면,

K-2 : (거란이) 太僕卿 耶律迭列과 禮賓副使 王英을 보내 良馬와 方物을 가지고 정단을 하례하였다. 上元日이 되자, 正旦使를 불러 함께 觀燈하였고, 또 崇德殿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두배 이상 물품을 내려주었다. (거란사신이) 돌아감에 이르러, 또 儀鸞副使 孫宴에게 경상까지 배웅하게 하였고, 따로 거란사신에게 大衣 백필과 大銀器 百兩을 주었고, 그 부사에게는 대사에게 준 반절을 주었다.³²⁾

태평흥국 3년(978), 정단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거란 사신이 돌아갈 때, 儀鸞副使 孫宴을 보내 경상까지 배웅했다는 기록에서, 그 이전부터 송반사를 보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반사는 관반사의 역할이 끝나면 수도부근에서 거란사신을 인계받았고, 다시 이들을 거란국경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록을 살펴보면, 접반사와 관반사를 임명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반사와 관련된 자료는 많지 않다.

31) 『長編』 권19, 太平興國 3년, 11월, “契丹使耶律諸里等辭歸國, 詔供奉官·閣門祇候王侁送至境上, 送伴使蓋始此”.

32) 『송희요집』 蕃夷1, 遼上, 太平興國 2년, 11월, “遣使太僕卿耶律迭列, 禮賓副使王英以良馬·方物賀正, 至上元, 召其使觀燈, 又宴崇德殿, 賜賚倍常. 及還, 又命儀鸞副使孫宴送至境上, 別賜其使大衣着百匹·大銀器百兩, 副使半之”.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문들이 해결된다.

K-3 : (경덕 2년(1005)) 10월 丙子일 초하루에, 屯田員外郎·權判三司勾院 杜夢誼과 侍禁·閤門祇候 康宗元을 송진종의 생일인 承天節을 축하하러 온 거란사신의 접반사로 임명하였고, 이어서 (거란사신이) 돌아가는 날, 송반사로 충당하였다.³³⁾

K-4 : 『接伴送語錄』 1권이 있는데, 陳氏가 말하길, 集賢校理 沈季長이 熙寧 9년(1076)에 接送伴北使 야율운과 관련한 기록이다.³⁴⁾

위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거란 송반사는 특별히 접반사가 문제가 생겨 교체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접반사가 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4의 내용도 접송반사 어록이 함께 쓰여진 것과 접송반사로 임명하였고, 반면에 관반사의 역할은 구분해서 사용하였음을 통해서 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반사가 돌아갈 때 송반사 임무까지 함께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장에서는 입국한 거란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접반사, 관반사, 송반사의 인선 과정과 그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IV. 伴使의 인선과 그 특징

1004년 전연의 맹약 이후로부터 거란과 송이 평화가 정착되었고, 양국의 관계 또한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졌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양국에서 파견된 사신은 각국의 황제 또는 권력자의 권위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황제를 만나는 과정까지 사려깊게 신경을 써야만 했다. 특히 평화가 지속되었다고는 하지만, 양국 사이의 술한 외교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

33) 『長編』 권61, 景德 2년, 10월 丙子朔, “屯田員外郎·權判三司勾院杜夢誼, 侍禁閤門祇候康宗元, 接伴契丹賀承天節使, 仍回日充送伴”.

34) 『文獻通考』 권199, “接伴送語錄一卷, 陳氏曰, 集賢校理沈季長, 熙寧九年, 接伴送虜使耶律運所記”.

들이 사신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송이 거란의 사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였는지 伴使의 인선 과정과 역대 임명된 반사의 추이를 통해 송의 반사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³⁵⁾

송대 기록을 살펴보면, 거란으로 가는 사신의 인선부터 송에 온 거란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반사의 인선까지 관련된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한편 반사의 실수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랜시간을 같이 붙어다니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반사의 실수가 잦아지자 황제가 輔臣들에게 말하기를 “근래 近臣안에서 館伴北使를 뽑았으나, 자못 적임자를 얻기 어려웠다. 이로인해 才識之士를 쉽게 얻을 수 없음에 황제가 탄식하였다고 한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L-1 접송거란사는 지금부터 반드시 禮貌를 신중히 하고, 言語 또한 침착하고 신중히 하여야 하며, 부득이 (뽑았으나) 내키지 않는다면, 별도로 (사람을) 보내 살피라고 詔書를 내렸다.³⁶⁾

L-2 右司諫 韓琦가 말하기를 “지금부터 國信使와 접반사의 정사와 부사를 보낼 때, 中書省과 樞密院에게 위임하여 올라온 이름 중에서 선택하게 하시고, 만약 신료들이 대수롭지 않게 감히 청하는 일이 있다면, 바라건데 엄단케 하소서”하니, 이것을 따랐다.³⁷⁾

이처럼 거란으로 가는 송의 사신과 송에 온 거란 사신을 위한 반사의 임명 규정들이 자주 바뀌고 심지어 中書省과 樞密院을 거쳐 뽑을 정도로 반사 임명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어려움은 비단 송만의 일은 아니었다. 거란 또한 송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임명한 반사들 또한 거란에서 인재를 선발할

35) 송의 거란 사신을 위한 伴使는 정사는 문신, 부사는 무신으로 임명되는 패턴으로 정형화되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정사인 문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6) 『송회요집』 職官36, “詔, 接送契丹使, 自今並須慎重禮貌, 穩審言語, 不得因循, 別致猜疑”.

37) 『長編』 권132, 寶元 2년, 3월 壬子, “右司諫韓琦言, 乞自今差國信及接伴使副, 委中書樞密選擇進名, 若有臣僚輒敢陳乞, 望賜嚴斷, 從之”.

때 더욱 특별히 신경을 썼고, 충민하고 문사를 아는 자로 남쪽의 사신을 예비케 하였다고 한다.

거란 사신의 반사를 수행한 송의 정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거란 사신을 수행한 宋의 正使

연번	연도	伴使名	사행 이력	정사이름	과거여부	비고	출처
1	1005 (10)	접송 반사	-	杜夢証	알 수 없음	接伴契丹賀承天節使 回日充送伴	長篇권61
2	1005 (10)	접송 반사	거란사행1회	樂黃目	舉進士	接伴契丹賀承天節使 回日充送伴	長篇권61
3	1005 (11)	관반사	관반사1회	李宗諤	第進士	在京接伴契丹賀承天節使	長篇권61
4	1006 (11)	접반사	-	陳若拙	第三人及第	接伴契丹賀正旦使	長篇권64
5	1006 (11)	접반사	거란사행1회 관반사1회	孫僅	賜進士	接伴契丹賀正旦使	長篇권64
6	1007 (11)	접반사	거란사행2회	王曙	中進士第	接伴契丹賀承天節使	長篇권67
7	1009 (2)	송반사	거란사행1회	陳知微	進士甲科	契丹國母賀正旦使	長篇권71
8	1009 (12)	관반사	거란사행1회	晁迥	舉進士		長篇권72
9	1009 (12)	접반사	-	張象中	알 수 없음	接伴契丹告哀使 太常博士 및 集賢校理 역임	송회요집고 職官51
10	1009 (12)	관반사	거란사행2회	李維	알 수 없음	館伴契丹告哀使 대중상부 5, 8년 지공거 역임	송회요집고 職官5

38) 진양의 기록에 따르면, 황우(皇祐) 6년(1054)에 거란인 조휘(趙徽)가 송의 사신으로 갔을 때, 채내한(蔡內翰)이 관반(館伴)이었음. 내한(內翰)은 한림학사(翰林學士)의 아칭으로, 채양(蔡襄)이 비슷한 시기에 한림학사로 임명된 적이 있어 채양으로 추정된다.

39) 진양의 기록에 따르면, 거란인 유운(劉雲)이 송의 사신으로 갔을 때, 역시량(呂侍郎)이 관반(館伴)이었음. 역시량(呂侍郎)은 여이간(呂夷簡)의 아들인 여공필(呂公弼)로 추정된다.

40) 『長編』 권341, 元豐 6년, 12월, “命給事中韓忠彥館伴遼使。初, 命禮部侍郎李常, 上批, 西邊事未定, 北人至闕, 須語及之, 恐常不知西事本末, 緩急難酬對, 故也。”

11	1010 (1)	송반사	거란사행2회	王隨	登進士甲科		長篇권73
12	1010 (11)	접반사	거란사행1회	趙稹	擢進士第	接伴契丹泛使	송회요집고 蕃夷2
13	1010 (11)	관반사	연번 5 참조	孫僅	賜進士	館伴契丹泛使	송회요집고 蕃夷2
14	1011	관반사	-	劉綜	擧進士第		송사권277
15	1011	관반사	연번 3 참조	李宗諤	第進士	劉綜이 지공거로 나가면서 이종약으로 교체	송사권277
16	1014 (9)	접반사	-	孫晁	알 수 없음	지공거 2회	長篇권83
17	1021 (2)	송반사	거란사행1회	任中行	알 수 없음		長篇권97
18	1022 (3)	접반사	-	江仲甫	알 수 없음	接伴契丹賀乾元節使 監察御史 역임	송회요집고 補編-銓選
19	1022 (6)	접반사	거란사행1회	徐奭	第進士	接伴契丹吊慰使	長篇권98
20	1022 (6)	접반사	관반사1회 거란사행1회	程琳	召試	接伴契丹吊慰使 奭出為兩浙轉運, 琳即代之.	長篇권98
21	1022 (6)	접반사	-	楊蛻	登進士第	接伴契丹祭奠使 在道虧失儀範, 故責及之.	長篇권98
22	1024 (6)	접반사	-	李孝若	알 수 없음	坐接伴契丹使失儀檢也.	長篇권102
23	1025 (1)	관반사	거란사행1회	薛奎	擧進士	館伴契丹賀長寧節使 장녕절은 송황태후 생신	長篇권103
24	1025 (9)	접반사	거란사행1회	張億	알 수 없음	億名犯北朝諱, 未審避與不避. 詔以程琳代之.	송회요집고 職官51
25	1025 (9)	접반사	연번 20참조	程琳	召試		
26	1026 (12)	접반사	거란사행2회	孔道輔	擧進士第		長篇권104
27	1027 (4)	관반사	연번 20참조	程琳	召試	館伴契丹賀乾元節使	長篇권105
28	1023~ 1032	접반사	-	王克明	알 수 없음	王克明接伴, 亦權名克用.(거란 황제 피휘)	송회요집고 職官51

29	1033 (3)	송반사	-	戴融	알 수 없음		長篇권112
30	1035	관반사	거란사행1회	任布	進士及第	管伴契丹使	송사권288
31	1040 (12)	접반사	-	張奎	알 수 없음	郭稹奉使及張奎接伴語錄, 並乞關送. 곽신은 1040년 7월 거란에 파견한 범사정사, 장규는 接伴契丹回謝使로 추정	송사권285
32	1040 (12)	관반사	관반사1회	賈昌朝	召試, 賜同進士出 身	館伴契丹回謝使	송사권285
33	1042 (3)	접반사	거란사행3회 접반사1회	富弼	復制科	接伴契丹泛使	長篇권135
34	1042 (3)	관반사	연변32참조	賈昌朝	召試, 賜同進士出 身	館伴契丹泛使	長篇권135
35	1042 (8)	접반사	연변33참조	富弼	復制科	接伴契丹泛使	長篇권137
36	1044 (8)	관반사	-	張錫	進士甲科	館伴契丹賀乾元節使	長篇권151
37	1045 (10)	송반사	거란사행1회	劉湜	舉進士	送伴契丹泛使	長篇권157
38	연도 미상 (인종때)	관반사	-	徐起	舉進士		송사권301
39	연도 미상 (인종때)	접반사	거란사행1회	王珪	舉進士甲科	長篇에는 王圭	송사권312
40	1049 (3)	송반사	거란사행1회	包拯	舉進士		長篇권166
41	1050 (3)	관반사	거란사행1회	趙槩	中進士第	館伴契丹泛使	동도사략71
42	1052 (4)	관반사	거란사행1회	韓綜	舉進士中第		長篇권172
43	1054 (4)	관반사	-	蔡襄(?) ³⁸⁾	舉進士	館伴契丹賀乾元節使	신종황제즉위사요어록
44	1055 (4)	접반사	거란사행1회	楊察	舉進士甲科	接伴契丹泛使	長篇권179
45	1056 (12)	관반사	거란사행1회	王洙	舉進士	館伴契丹國母賀正旦使	長篇권184

46	1057 (3)	관반사	거란사행2회	錢明逸	繡殿中丞策 制科	館伴契丹泛使	長篇권185
47	1057	접반사	-	陳希亮	進士第		송사권298
48	1057 (4)	관반사	거란사행1회	呂公弼(?) ³⁹⁾	賜進士出身	館伴契丹國母賀乾元節使	신종황제즉 위사요어록
49	1063 (4)	관반사	거란사행1회	周沆	第進士	館伴契丹賀乾元節使	長篇권198
50	1065 (12)	관반사	-	馮京	舉進士		송회요집고 蕃夷2
51	1066	접반사	거란사행1회	程師孟	進士甲科	接伴契丹賀壽聖節使	송사권331
52	1066 (3)	접반사	거란사행2회	趙瞻	舉進士第	接伴契丹賀正旦使	長篇권207
53	1066 (12)	접송 반사	거란사행2회 관반사1회	蘇頌	第進士	接送契丹賀壽聖節使 壽聖節接送伴使虜使 (卷三十九)	道鄉集권39 송사권340
54	1068 (4)	관반사	-	滕甫	第三人		송회요집고 儀制3
55	1072 (4)	송반사	거란사행1회	晁端彥	알 수 없음	送伴契丹賀同天節使	長篇권232
56	1074 (2)	관반사	거란사행1회 관반사1회	韓績	登進士第	館伴契丹泛使	長篇권250
57	1074 (2)	접반사	거란사행1회	蔡確	第進士	接伴契丹泛使	長篇권260
58	1075 (2)	접반사	-	向宗儒	알 수 없음	接伴契丹泛使	長篇권260
59	1075 (3)	관반사	연번55참조	韓績	登進士第	館伴契丹泛使	長篇권261
60	1075 (3)	송반사	거란사행1회	王欽臣	進士及第	送伴契丹泛使 送伴遼使, 代向宗儒.	長篇권261
61	신종때	관반사	-	滕元發	舉進士		송사권332
62	1076 (5)	접반사	-	朱溫	알 수 없음	接伴契丹告哀使	長篇권275
63	1076 (5)	접반사	거란사행1회	安燾	登第	接伴契丹告哀使 주온에서 변경	長篇권275
64	1076 (12)	접송 반사	거란사행1회	沈季長	지공거역임	接送契丹賀正旦使	문헌통고권 199
65	1078 (윤1)	접반사	-	張充宗	알 수 없음	사행 중 실수	長篇권287

66	1080 (1)	송반사	-	李琮	登進士第		長篇권302
67	1082 (10)	접반사	거란사행1회	吳安持	알 수 없음	接伴契丹賀正旦使	長篇권330
68	1083 (6)	접반사	-	賈青	알 수 없음		長篇권335
69	1081 (12)	관반사	연번53참조	蘇頌	第進士	館伴契丹賀正旦使	長篇권339
70	1083 (12)	관반사	-	李常	擢第	서하 문제로 인해 한충언으로 교체 ⁴⁰⁾	長篇권341
71	1083 (12)	관반사	거란사행2회	韓忠彥	舉進士		長篇권341
72	1086 (12)	관반사	거란사행1회	蘇軾	殿試中乙科	館伴契丹賀正旦使 軾辭行, 實錄乃不書, 當檢.	송사권313권
73	1087 (2)	접반사	-	呂升卿	알 수 없음	升卿以兵部接遼使.	長篇권395
74	1089 (12)	관반사	거란사행1회	王巖叟	廷對第一	館伴契丹賀正旦使 사행은 못감	송사열전15 1
75	1091 (6)	접송 반사	거란사행1회	宇文昌齡	進士甲科	接送伴契丹使	長篇권460
76	1092 (1)	송반사	-	呂希績	알 수 없음	送伴契丹賀正旦使	長篇권469
77	1092 (9)	영반사	-	王子韶	中進士第	迎伴契丹使	송사권329
78	1094 (12)	접반사	거란사행1회	時彥	舉進士第		-
79	1098 (2)	송반사	-	王韶	알 수 없음	送伴契丹賀正旦使	長篇권494
80	1098 (3)	접반사	-	韓粹彥	알 수 없음		長篇권496
81	1099 (1)	접반사	-	劉逵	進士高第	接伴契丹賀正旦使	長篇권505
82	1099 (1)	관반사	거란사행1회	蔡京	進士第	館伴契丹泛使	長篇권505
83	1099 (2)	접반사	-	曾旼	알 수 없음	接伴契丹泛使	長篇권506
84	1099 (12)	관반사	-	安敦	上舍及第	館伴契丹賀正旦使	長篇권519

85	1100 (6)	접반사	-	胡宗炎	登第	接伴契丹弔祭使 조위사와 제전사는 구분	송사권318
86	1101 (2)	접반사	-	曾孝純	알 수 없음	接伴契丹告哀使	송회요
87	1101 (3)	관반사	거란사행1회	趙挺之	進士上第	館伴契丹告哀使	송회요
88	1102 (5)	접반사	-	宋景	알 수 없음	사행 증 실수	송회요
89	1105 (8)	접반사	-	王革	알 수 없음	接伴契丹賀天寧節使	송회요
90	휘종때	접반사	-	唐恪	蔭登第 (음서)	迎遼使	송사권352
91	휘종때	송반사	-	蕭服	第進士	送伴契丹使	송사권348
92	1108 (9~12)	관반사	거란사행2회	劉正夫	未冠入太學		동도사략 102
93	1114 (4)	송반사	-	楊信功	알 수 없음		송회요
94	미상	송반사	-	李永德	알 수 없음	李永德送伴契丹使道卒	송회요

여러 사료들을 통해서 파악해 본 거란 사신을 위한 송의 伴使로 임명된 正使는 대략 87명 정도로 추산된다. 북송대 후반으로 갈수록 기록이 소략하거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간접적인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양국의 사행 기록이 북송의 말엽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반사는 계속해서 임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사의 관직은 거의 대부분이 과거 합격자 출신으로 열전에 등재된 사람이 많았다. 또한 열전이 없어서 이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파견 당시 관직을 통해서 볼 때, 과거합격 출신자들이 사신으로 갈 때 임명된 관직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관직을 소유한 것으로 과거 출신자라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정사는 문신으로 구성하고 반사 선발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 출신자로서 어느정도 검증된 사람이 선발되었을 것이다.

M : 송진종 경덕 2년(1005) 10월에, 屯田員外郎·權判三司勾院 杜夢證을 임시로 (假) 衛尉卿으로 삼고, 侍禁·閤門祗候 康宗元을 임시로(假) 西上閤門副使로 삼아, 承天節을 축하하러 온 거란 사신을 접반하였고, 그 사신들이 돌아가는 날, (두몽증과 강종원을) 송반사로 임명하였다.⁴¹⁾

N : 경덕 3년(1006) 11월에, 開封府判官·太子中允·直集賢院 孫僅을 임시로(假) 衛尉卿으로 삼아, 송의 정단을 축하하러 온 거란사신을 접반하게 하였다.⁴²⁾

O : (大中祥符) 2년(1009) 12월) 이달에, 太常博士·集賢校理 張象中을 임시로(假) 太常少卿으로 삼았고, 侍禁·閤門祗候 薛貽를 임시로(假) 引進使로 삼아 거란의 告哀使를 접반케 하였다. 이에 역마를 타고 가게 하였다.⁴³⁾

P : (己酉)일에, 主客郎中·知制誥 王曾을 거란국주 생신사, 宮苑使·榮州刺史 高繼勳을 부사로 삼았다. ……(생략) 구제도에 出使할 때는 반드시 假官하여 보냈는데, 계훈은 본래 관직이 이미 높아서, 다시 가관을 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이것을 법례로 삼았다.⁴⁴⁾

위의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거란으로 사신을 가거나 반사로 거란 사신을 수행하는 경우, 假官하여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미 관직이 높으면 따로 가관하지 않고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애사처럼 급하게 거란 사신을 수행해야 할 때, 황제를 만나지 않고 가관한 후 바로 교통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경까지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행 관직의 가관은 거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41) 『송회요집고』 職官51, 館伴使, “真宗景德元年十月, 以屯田員外郎·權判三司勾院杜夢證假衛尉卿, 侍禁·閤門祗候康宗元假西上閤門副使, 接伴契丹賀承天節使, 迴日充送伴使”. 다만 경덕 원년(1004)은 『장편』의 기록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경덕 2년의 오기로 보인다.

42) 『송회요집고』 職官51, 正旦使, “(真宗景德) 三年十一月, 開封府判官·太子中允·直集賢院孫僅假衛尉卿, 接伴契丹賀正旦使”.

43) 『송회요집고』 職官51, 館伴使, “(대중상부 2년 12월) 是月, 差太常博士·集賢校理張象中假太常少卿, 侍禁·閤門祗候薛貽假引進使, 接伴契丹告哀使, 仍馳驛以往”.

44) 『장편』 권79, 대중상부 5년, 10월, 己酉, “以主客郎中·知制誥王曾為契丹國主生辰使, 宮苑使·榮州刺史高繼勳副之. …… 舊制, 出使必假官, 繼勳本秩既崇, 不復假官, 自是為例”.

天聖 3년(1025) 1월에 송의 長寧節⁴⁵⁾을 축하하러 온 거란사신 蕭從順이 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都亭驛에서 押宴을 주관한 王曾에게 말하기를

Q : (南朝, 송)가 매년 거란에 사신을 보내오면, 왜 모두 기관을 행하는 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묻자, 왕증이 대답하기를 사자의 임무는 오직 그 사람을 보는 것이지, 관의 高下로써가 아닙니다. 지금 二府에는 8명이 있는데, 여섯명은 일찍이 사신을 수행한 적이 있고, 오직 그 사람됨을 보는 것이지, 관직으로써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중순이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잠잠하였다.⁴⁶⁾

이처럼 송에서 파견한 사신 관직의 기관은 거란에서도 인식할 정도로 일반적인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二府는 송대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樞密院과 중요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中書省으로 兩府라고도 불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신을 임명할 때 중서성과 추밀원에게 위임하여 사신 인선을 고려했던 것처럼, 어느정도 검증된 이부 출신의 관료들이 파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행을 수행하는 중에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았고, 한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거란 사신이나 반사로 기용되지 않았다. 반대로 자기가 맡은 사행의 임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여러 차례 다시 임무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절 이상이 여러 차례 거란 사신을 역임하였거나 반사로 임명된 사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외교 특성상 학문적 소양과 성품이 검증된 사람은 외교적 결례를 범할 우려가 적었고 사행을 수행하면서 거란에 대한 정보

45) 장녕절(長寧節)은 진종의 황후인 장헌황태후(章獻皇太后)의 생신일로, 정월 8일이다. 당시 거란과 송 사이에서는 황제의 생신뿐 아니라 황태후와 태황태후, 심지어 거란 성종(聖宗) 황후의 생신까지 축하하는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행의 파견은 거란과 송이 의제가족관계(擬制家族關係)를 맺으면서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거란에서의 여성, 즉 황태후의 지위가 중국왕조와는 다른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46) 『장편』 권103, 천성 3년, 1월, 戊子, “從順問曾, 南朝每降使車, 悉皆假攝, 何也. 曾曰, 使者之任惟其人, 不以官之高下, 今二府八人, 六嘗奉使, 惟其人, 不以官也. 從順默然”.

에 받았기 때문에 자주 인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란 사행과 반사의 경험이 있는 신료들은 위의 경험을 활용하여 거란 사신이 매번 궐에 이르면, 거란 사신의 접대를 하기 위해서 거란 사신을 위한 잔치에 참여토록 하게 하였다.⁴⁷⁾

마지막으로 반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거란의 國諱를 피해서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반사의 임명뿐 아니라 거란으로 사신을 파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고, 사신을 자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임시로 이름을 고쳐 처리하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북송대 거란 사신을 위한 반사의 성립과정과 임명 과정을 살펴보았고, 실제 반사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서 거란과 송의 외교적 단면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반사의 운영은 거란과 송이 전연의 맹 이후 평화가 지속되면서 사행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외교적 모습이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반사가 존재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연의 맹 이후부터 제도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중국역사에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즉 거란과 송이 대등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국신사’라는 사행 시스템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접대하기 위한 반사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황제를 대표해서 파견되었던 사신을 접대하는 문제는 국가의 품격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었다. 따라서 거란 사신의 입국에서부터 황제가 있는 수도에 이르는 과정, 수도에 이르러 황제를 만나기까지 여러 과정과 다시 사행을 마치고 국경으로 돌아가는 과정 모두에서 세심하게 사신을 접대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정사와 부사만이 아닌 상절, 하절, 중절 등 대략 100여 명의 사신단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47) 『장편』 권72, 대종상부 2년 11월, 己未 “詔先充北朝國信副使及曾接伴人等, 每有北朝人使到闕, 並令依所借服色·官位·稱呼立班坐宴”.

아니었다.

사람이 사람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사신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좌천되거나 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수는 사신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실수 그 자체가 국가의 품격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반사나 거란으로 가는 사신으로 임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임무를 잘 수행한 경우, 다른 반사를 수행하거나 거란 사신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거란 사신을 다녀온 반사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사의 운용은 이 시기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비슷한 제도가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동아시아 외교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란과 송 사이의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 대 국가간의 관계에 따라서 반사의 임명과 운용은 다르게 이루어졌고, 종합적으로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거란과 송 사이에서 반사의 운용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거란과 송과 더불어 향후 고려, 거란, 송, 서하 각국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반사 뿐 아니라 다른 이민족 또는 국가간의 사신 파견의 양상과 반사의 운영 실태를 통해서 동아시아 외교사행 시스템 속에서 반사의 임무가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宋]高承 撰(明)李果 訂, 1985, 『事物紀原』, 北京: 中華書局
- [宋]薛居正 等撰, 1992, 『舊五代史』, 北京: 中華書局
- [宋]歐陽修 撰, 1992, 『新五代史』, 北京: 中華書局
- [宋]李燾 撰, 1992, 『續資治通鑒長編』, 北京: 中華書局
- [宋]葉隆禮 撰, 2000, 『契丹國志』, 北京: 中華書局
- [宋]王稱 撰, 1991, 『東都事略』, 台北: 中央圖書館
- [宋]陳襄, 1985, 『神宗皇帝即位使遼語錄』, 金毓黻, 『遼海叢書』, 瀋陽: 遼瀋書社
- [宋]許亢宗 撰, 程郁·翟曉鳳 整理, 0000, 『宣和乙巳奉使金國行程錄』,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 編, 2008, 『全宋筆記』 第4編 8冊, 鄭州: 大象出版社
- [元]馬端臨 撰, 2011, 『文獻通考』, 北京: 中華書局
- [元]脫脫 等撰, 2020, 『金史』(點校本二十四史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 [元]脫脫 等撰, 2016, 『遼史』(點校本二十四史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 [元]脫脫 等撰, 2016, 『宋史』, 北京: 中華書局
- [宋]宇文懋昭 撰, 2011, 『大金國志校證』, 北京: 中華書局
- [朝鮮]鄭麟趾 撰, 1972, 『高麗史』, 서울: 亞細亞文化社
- [清]徐松 輯, 2014, 『宋會要輯稿』,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清]畢沅 編, 1981, 『續資治通鑒』, 北京: 中華書局, 1981.
- 趙永春 輯注, 2017, 『奉使遼金行程錄』(增訂本), 北京: 常務印書館
- 김위현 외 4인 역, 2012, 『國譯 遼史』 上·中·下, 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 김만현 역, 2015, 『사물기원』 上·中·下, 서울: 역락
- 권중달 역, 2018, 『속자치통감』, 서울: 삼화
- 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동양사학연구』 101
- 한용수, 2009, 「韓中避諱小考」,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 김성규, 2010, 「3개의 '트라이앵글': 北宋時代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大勢와 그 특징에 관한 試論」, 『역사학보』 205
- 김성규, 2012, 「宋의 國信使가 契丹의 황제·황태후를 알현하는 의례」, 『동양사학연구』 120
- 김성규, 2012,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의례」, 『역사학보』 214
- 김성규, 2014, 「거란의 '國母' 對 송의 '황태후'-賀慶使 교환으로 보는 송-거란 외교의 일

면」, 『사림』 50

- 정동훈, 2018, 「고려-거란 관계에서 세 층위의 소통 구조」, 『한국역사연구회』 107
유빛나, 2019, 「契丹과 高麗의 사절 왕래-東京使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70
홍성민, 2020, 「송대 對遼 첩보조직 및 운영 연구」, 『동양사학연구』 152
유빛나, 2021, 「거란과 송의 국신사 파견과 그 양상」, 『세계역사와문화연구』 제59집

劉浦江, 2008, 「遼朝國號考釋」, 『松漠之間』, 中華書局

劉鳳翥, 2006, 「契丹大字《耶律祺墓志銘》考釋」, 『內蒙古文物考古』, 2006年01期

王楚, 1996, 「宋東京至遼南京驛路考」, 『古代地理叢考』, 中華書局

古松崇志, 2014, 「契丹·宋間の国信使と儀禮」, 『東洋史研究』 73-2

古松崇志, 2010, 「契丹·宋間における外交文書としての牒」, 『東方學報』 85

투고일: 2023년 03월 19일 심사완료일: 2023년 04월 08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6일

■ Abstract ■

Diplomatic Practices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 A Closer Look at Welcoming and Sending-Off of Khitan Envoys

Ryu, Vit-na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plomatic practices and treatment of the Guoxinshis who were regularly dispatched between Northern Song Dynasty and Khitan as part of the Treaty of Chanyuan. The study examines the multifaceted roles of envoys dispatched by the royal court of Northern Song to entertain Khitan envoys, such as the Jiebanshis, Guanbanshis, and Songbanshis. In different capacities, these envoys we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safe and entertaining passage of Khitan envoys to and from the vicinity of Kaifeng where the Song emperor resided. The responsibilities of Song envoys during these prolonged and delicate processes were paramount since any misstep could damage state dignity. Thus, only individuals with reputable academic refinement, character, and knowledge of the Khitan were appointed into these positions. The system of managing Banshis became a hallmark of East Asian diplomacy, influencing neighboring countries and shaping diplomatic practices in the region.

Key words: Guoxinshi, Northern Song Dynasty, Khitan, Diplomatic Practices, East Asian Diplomacy